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52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주철현·허 영·황운하

조계원 · 조인철 · 어기구

안호영 · 진성준 · 송기헌

이병진・위성곤・문금주

김문수 · 천하람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거주민대다수도 고령층으로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청년층)이 제한적이므로, 우선 고용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주변지역"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	
주자와 <u>주변지역</u> 주민을 우선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
하여 고용할 수 있다.	<u> 치단체의</u>